

● 제289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19. 8. 30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김정환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796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정환 의원외 18명
- 나. 제안일 : 2019. 7. 31.
- 다. 회부일 : 2019. 8. 13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서는 시장이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서울시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인 ‘서울상상나라’에 대해서는 운영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이와 관련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서울 상상나라 입장료 감면의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6조제1항5의2호의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조례안의 개요

- 동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희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예우와 선양을 도모하기 위해 시립 어린이복합시설인 “서울 상상나라”를 이용하는 의사상자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는 정의로운 서울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
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 □ 입장료 감면 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<sup>1)</sup>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

1) 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- 이에 개정안은 “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”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상나라의 입장료 4천원(개인)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 이미 상위법에서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지원을 하는 제도를 서울시 차원에서 확대하려는 것으로 집행부도 동의한 사항임.

### <상위법에 따른 고궁 및 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 근거>

<p><b>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</b></p>
<p>제15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의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</p>
<p><b>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</b></p>
<p>제17조의2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법 제15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의상자. 다만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.</li> <li>2.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. 다만,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.</li> <li>3.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</li> </ol>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 4. 1.>

- 한편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음.

**<상위법에 따른 고궁 및 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>**

감면시설	이용료나 입장료 감면을
고궁 및 능원, 국공립 공원, 독립기념관, 전쟁기념관(대관공연 제외),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(대관전시 제외), 국공립 수목원, 국공립 자연휴양림	100/100
국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, 국공립 공공체육시설	50/100

**<조례에 따른 공원 등 이용지원>**

감면시설	이용료나 입장료 감면을	비고
공원 입장료	100/100	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<sup>2)</sup>
한강공원 체육시설	50/100	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<sup>3)</sup>
공영주차요금	80/100	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<sup>4)</sup>
화장시설 사용료	100/100	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<sup>5)</sup>

2)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7., 2019. 3. 28., 2019. 7. 18.>

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## □ 국가유공자 지원과의 형평

- 현행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그 외 감면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,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 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기리거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<sup>6)</sup>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, 다른 사람을 위하여

3)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4조(이용료)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3., 2019. 5. 2.>

2. 국가유공자·의사상자·장애인·65세 이상 노인·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·토요일교외 체험학습 참여자·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

4)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7. 15., 2011. 9. 29., 2013. 5. 16., 2013. 10. 4., 2016. 5. 19., 2016. 7. 14., 2019. 1. 3., 2019. 5. 2.>

1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. 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

라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

5) 「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 ② 시장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,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·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7. 14., 2017. 1. 5., 2019. 5. 16.>

6) 「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

희생한 것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것과 비교하여 과소평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,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### <현행 상상나라 입장료 감면 대상 및 내용>

「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제6조(입장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. <개정 2015. 5. 14., 2019. 5. 2.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6.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
7. 어르신(만 65세 이상)
8. 서울상상나라 회원(연회비 납부자에 한함)

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

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「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
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5. 2.>

[조례 제7107호(2019. 5. 2.)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

### 3 종합 검토의견

-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시립시설의 감면사항을 고려하여 의사상자 등에게도 이에 준하는 감면혜택을 준다면 의사상자 등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.
- 이는 자기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헌신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때,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감면규정 신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